

2023년도 제13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6. 12.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김연희, 송수현,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3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402건(안전번호 제2023-56429호~58830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56429호~56464호(순번 1번~36번)는 블로그에서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거래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56465호~56480호(순번 37번~52번)는 카페를 통해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이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56481호~56485호(순번 53번~57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

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56486호~56490호(순번 58번~62번)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58809호(순번 2381번)는 해당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자의 작성물의 성격, 상업적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그 외 안전번호 제2023-56491호~58830호(순번 63번~2380번 및 2382번~2402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전 게시물 3,897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3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3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김선화 선임: 제2호 안전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전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고, 제2호 안전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0쪽~13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선화 선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

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3-138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화 선임: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28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4,047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3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 뮤지컬 촬영물 등 영상 판매 및 교환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사안 총 94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 또는 교환하였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36번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36번은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7번 내지 52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카페에서 제공 중인 영화, 방송 등 영상 불법복제물 총 40건임.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37번 내지 52번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7번 내지 52번은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3번 내지 5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와 '★★★★★'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10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53번 내지 57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

중인 출판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순번 53번은 중고책을 판매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불법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
- 김선화 선임: 해당 건은 중고책을 판매하면서 PDF파일을 끼워파는 것으로 보이나, 게시자의 게시글을 전부 살펴보면 판매가 완료된 이후에도 ‘△△△△ △△△△△ △△△△△△△ △△△ △△ △△△△△△!!(△△△ △△)’라는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점과 댓글의 내용으로 보아 PDF 스캔본을 별도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함.
- B 위원: 중고책 판매는 문제가 없더라도 동일 게시글에 중고책과 별개로 다수에게 PDF파일을 별도 판매하고 있다면 이전에 가결해 왔던 안전과 같은 사안으로 보고 가결하는 것이 맞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신지?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3번 내지 57번은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8번 내지 6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인 '♠♠♠', '♣♣♣', '☆☆' 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 총 5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링크 정보를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거나 한 단계를 거쳐 접속 가능한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는 모두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글'에 검색결과 제한을 요청한 바 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로 확인됨.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외 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함.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아니하므로,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중인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게시된 것이 광고가 아니고 링크인지?
- 김선화 선임: 일부 게시물에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링크와 함께 광고가 게시되어 있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8번 내지 62번에 대해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3번 내지 240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3,898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음악,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그 중 순번 2340번, 2349번, 2381번, 2389번~2391번 총 6건은 ‘○○○’와 ‘◆◆◆◆’ 블로그에 게시된 불법복제물로, 게시물의 내용을 고려할 때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게시자에 대한 저작권법 준수 안내의 목적으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불법복제물 일부가 아닌 전체를 게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함. 또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려면 해당 블로그가 상업적 목적이 아니어야 하고 해당 게시물에는 광고가 없어야 하는데, 지금 제시된 안전들은 블로그 제목만 봐도 ‘○○○○○○’, ‘○○○○○○○○’ 등 게시자가 사업체의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것이 아니라 보호원이 모니터링한 것이 아닌지?
- 김선화 선임: 그러함.
- A 위원: 시정권고의 취지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이 확산되는 것을 시급하게 막기 위한 조치로 볼 때, 개인 블로그까지 보호원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지만, 해당 안건 중 2381번과 같이 해당 블로그와 게시물이 모두 사적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고, 본인의 창작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삭제의 시정권고로 가결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임.
- B 위원: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음.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떠한지?
- 김선화 선임: 전체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고, 만장일치로 경고의 시정권고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됨.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정리하자면, 순번 2381번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삭제 및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로 가결하자는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전체 모니터링 자료와 심

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만장일치로 순번 2381번에 대해서만 경고의 시정권고로 가결하고, 그 외 보호원에서 모니터링한 3,897건에 대해서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3번 내지 240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 및 순번 2381번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56429호~56485호(순번 1번~57번)에 대해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56486호~56490호(순번 58번~62번)에 대해 가결하고, 그 외 안전번호 제2023-56491호~58830호(순번 63번~2402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과 안전번호 제2023-58809호(순번 2381번)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13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3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6. 19.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송수현

위원 김연희